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시행 2021. 11. 23.]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1-5호, 2021. 11. 23., 일부개정]

화학물질안전원(사고예방심사2과), 043-830-4346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2항 관련 별표 5 비고 제3호에 따라 별표 5의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규모, 범위와 설치 및 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 ① 소량기준은 별표 1에 규정된 수량(이하 "소량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유해화학물질의 경우에는 별표 2의 산정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산정한 양을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소량기준으로 본다.

- ②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은 순간최대체류기준과 보관·저장기준으로 구분한다.
- ③ 삭제

제3조(혼합물 등의 소량기준) ① 유해화학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의 순간최대체류량 또는 보관·저장량을 산정할 경우에는 규제대상 유해화학물질을 모두 고려하여야 하며, 1개 물질이라도 규제대상이 될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시설로 간주한다. 이 경우 유해화학물질의 양은 해당 유해화학물질을 포함한 전체 혼합물 총량을 말한다.

- ② 2개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2개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을 취급하는 시설로서 해당 시설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작은 값의 소량기준을 적용한다.

제4조(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①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소량기준 미만으로 제조·사용, 저장 또는 보관하는 시설
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실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소량기준 미만으로 제조·사용, 저장 또는 보관하는 시설
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소량기준 미만으로 제조·사용, 저장 또는 보관하는 시설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소량기준의 2분의 1 미만으로 제조·사용, 저장 또는 보관하는 시설

②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소량 취급시설 해당여부를 결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1. 별표 1 제2호, 제3호에 따른 단위공장의 순간최대체류량 또는 보관·저장량이 소량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량취급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단위공장이 물리적으로 분리된 공간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서 각 분리된 공간의 순간최대체류량 또는 보관·저장량이 소량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량취급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3.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 미만의 유해화학물질을 투입하여 규제대상 함량기준 미만으로 희석되는 설비는 소량취급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4. 각 호의 상황을 고려한 판단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제5조(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 ① 유해화학물질 소량 제조·사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은 별표 4과 같다.

- ② 유해화학물질 소량 저장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③ 유해화학물질 소량 보관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6조(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의 변경 등에 관한 규정 적용)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이 발생한 경우 별표 1의 제1호가목1) 및 같은 2)와 별표 2의 제3호가목3)의 단서를 적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주요설비의 변경 없이 부속설비만 변경하는 경우
2. 기존시설보다 용량은 커지지 않으면서 그 외 시설 규격(재질, 설계압력 등)은 기존과 같거나 상향되는 경우
3. 유해화학물질 변경 시 변경 전과 동일한 설치·관리기준 및 세부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제7조(신규 지정된 유해화학물질 적용 기준) 2015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지정된 유해화학물질을 소량 취급하는 자로서 해당 유해화학물질 신규 지정 이전에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는 별표 4의 제1호가목1) 및 같은 목 2)와 별표 5의 제3호가목3)의 단서를 적용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한 것으로 본다.
(‘2014년 12월 31일 이전 착공’은 ‘유해화학물질의 신규 지정 이전 착공’으로 적용한다)

제8조(검사의 내용 및 방법)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의 검사항목, 검사내용 및 검사방법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공고한「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을 적용한다.

부칙 <제2021-5호,2021.11.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